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가단532175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5. 7. 20.

**판결 선고** 2015. 9. 9.

##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16,209원 및 그 중 9,075,473원에 대하여는 2014. 8. 18.부터, 62,744,117원에 대하여는 2014. 9. 17.부터 각 2014. 12. 1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3. 1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2013. 12.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3. 가. 피고 D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36,500,000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  
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65,950,412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① 2009. 5. 19. 보증원금 80,750,000원(61,2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5. 18.(2014. 5. 15.로 연장), ② 2009. 6. 22. 보증원금 11,200,000원(8,96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6. 21.(2014. 6. 20.로 연장)인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에 기하여 기업은행

성남지점으로부터 85,000,000원, 하나은행 문정동지점으로부터 14,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4. 5. 16. 원금연체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8. 18. 하나은행에 9,075,473원, 2014. 9. 17. 기업은행에 62,744,117원을 변제하였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지급금 잔액은 1,252,329원이다. 또한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피고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 이래 연 12%이다.

|   |            |                       |     |     |         |
|---|------------|-----------------------|-----|-----|---------|
| 1 | 61,200,000 | 2014.5.16.-2014.9.16. | 124 | 2.0 | 415,820 |
| 2 | 8,960,000  | 2014.6.21.-2014.8.17. | 58  | 2.0 | 28,470  |
| 계 |            |                       |     |     | 444,290 |

## 나. 판단

피고 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16,209(대위변제금 합계 71,819,590원+대지급금 1,252,329원+위약금 444,2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075,47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8. 18.부터, 대위변제금 62,744,11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4. 9.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인 2014. 12. 17.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 D,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1. 피고 D과 채권최고액 60,000,000원, 2013. 12. 19. 피고 E과 채권최고액 66,1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1. 피고 D에게, 2013. 12. 30. 피고 E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갑 7호증의 기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그에 따른 대출 및 신용보증이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4. 5. 1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4. 8. 18. 및 2014. 9. 17.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피고 B의 무자력 및 피고 B, D, E의 사해의사

피고 B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시가 약 310,00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최소한 원고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었던 이 사건 구상금채무 원금 70,16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그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변경)에 대한 1번 근저당채무 원금 146,479,528원, 주식회사 아이민파트너스에 대한 2번 근저당채무 36,000,000원, 피고 D에 대한 수표할인금채무 20,000,000원(지급일이 2014. 1. 15.인 액면 500만 원의 수표 2장 및 지급일이 2014. 3. 31.인 액면 500만 원의 수표 2장), 피고 E에 대한 차용금채무 66,100,000원 등 합계 338,739,528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갑 7 내지 12호증, 을라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 중 피고 D, E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 E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D, E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3) 피고 D, E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즉 피고 D은 피고 B과 약 30년 가까이 사업상 관계를 맺었고 약 20년 전부터 피고 B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다가, 2012.-2013.경부터 거래액수가 커지게 됨에 따라, 2013.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 원 및 3,600만 원의

근저당권 외에는 가압류 등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 B의 신용이나 사업에도 특별한 이상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약 6개월 뒤 피고 B이 부도를 내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피고 B에게 사업자금조로 가계수표 8매 총 3,300만원 및 현금 350만 원을 융통해 주는 등 이전과 다른없는 거래를 하였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7 내지 12호증, 을라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 주장의 사정만으로 위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D은 피고 B과의 오랜 금전거래를 통하여 피고 B이나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3. 12. 2.경 최소 2,000만 원의 수표를 할인하여 준 상태에서 돌연 피고 B에게 담보가치가 남아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다음 비로소 추가로 수표를 할인하여 주었다.

② 피고 B이 새로이 융통받은 위 수표할인금을 실제로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통하여 소외 회사가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나) 피고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 B을 알게 되어 그에게 2008. 9. 4.부터 2013. 11. 19.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66,1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 B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 당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E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수익행위 당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에서 매각이 이루어져 피고 D, E이 취득한 위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5. 7. 9. 위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중 36,500,000원을 피고 D에게, 65,950,412원을 피고 E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하였다(갑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피고 D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36,500,000원, 피고 E은 65,950,412원의 각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지원**

별지